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688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송호섭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2. 2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가소200368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 20.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상해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입원시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부터 2013. 3. 4.까지 사이에 한의사 D가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3차례에 걸쳐 7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1. 7. 9. 630,000원, 2012. 1. 3. 570,000원, 2013. 3. 6. 720,000원 합계 1,92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나 질병이 아님에도 2011. 7. 2.부터 2013. 3. 4.까지 사이에 70일 동안 장기입원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1,92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158,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2019. 2. 8.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 F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위 D는, 피고가 E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단한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148,590원을 교부받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9. 6. 13.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4125)에서 위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D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19.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863)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D가 상고하였으나 2020. 12. 11. 대법원(대법원 2020도14841)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D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1,92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험금 1,92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6.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김슬기, 판사 송효섭